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2012년 9월 27일 구미시 산동면 국가산업4단지내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로 인해 주민 및 기업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가. 보상금등의 지급대상 (안 제3조)
- 나.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안 제4조, 제5조)
- 다. 보상금 수령권자, 결정, 지급청구, 공고 (안 제6조 ~ 제11조)
- 라. 보상금의 구상 (안 제12조)
- 마. 보상금 시행일, 경과조치 (안 부칙)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제61조
「민법」 제469조 및 제480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다.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5건(미반영)
- 라. 제정조례안 : 붙임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2년 9월 27일 구미시 산동면 국가산업4단지내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로 인해 주민 및 기업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란 불산누출사고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발생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말한다.
2. “보상금”이란 불산누출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법적 보상금과 특별 위로금을 말한다.
3. “피해지역”이란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등의 지급) 보상금등의 지급대상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피해로 한정한다.

제4조(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
2.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 중 구미시의회 의장이 지명한 자,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변호사, 주민대표,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대표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계과장이 된다.
- ⑧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⑨ 각 분야별 원활한 보상업무를 위하여 기업부분과 농업부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보상완료시까지로 한다.

-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수령권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이하 “보상금 수령권자”라 한다)는 피해자 본인으로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제7조(지급의 제한) 보상금은 누출사고에 따른 피해가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상금 결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 보상은 정부의 보상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보상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9조(보상결정의 통지) 보상금이 결정된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보상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지급청구) ① 보상금 수령권자는 보상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거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2. 신청인 자격
3. 신청기간
4. 구비서류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보상금의 구상) 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상할 경우에는 보상에 소요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제13조(보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보상금 및 특별 위로금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와 같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현 시점에서 피해보상액이 확정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산하기 어려움.

4. 작성자

회계과 지방행정주사보 조 영 극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① 제5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민법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